

가입/납입/해지방범



가입방법 ① 본인가입

신병교육기관 (훈련소, 신병교육대대 등)	자대 전입 후(기관 복무 중)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대 인사담당자가 “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” 통합 발급, 개인(훈련병) 분배 훈련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 방문 / 가입 안내 희망하는 은행의 “장병내일준비적금” 가입신청서를 작성, “가입자격확인서” 제출 	<p>〈현역병, 상근예비역〉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이 행정반의 “국방인사정보체계” → “가입자격확인서” 신청, 부대 인사담당자 승인 후 출력 휴가, 외출 시 “가입자격확인서”를 지참 * 2개 은행 가입 시 : 확인서 2부 필요 본인이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

복무 형태별 “가입자격확인서” 발급방법

- * 의무경찰 : 소속 의경부대(행정반)에 직접방문 / 신청
- * 의무해양경찰 : 소속 해양경찰관서 의경 지도관에게 신청
- * 대체복무요원 :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신청
- * 의무소방원 : 소속 소방관서 의무소방 담당자에게 신청
- * 사회복무요원 : [온라인] 사회복무포털(sbm.mma.go.kr)신청
[오프라인]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

가입방법 ② 대리가입

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복무여건을 고려하여 부모님께서 직접 은행을 방문하시어 자녀(병역의무 이행자)의 적금을 대리 가입할 수 있는 수신 상품입니다.

- 대리자 : 부모님 중 한 분
- 필수 지참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), 부모님 신분증, 가입자격 확인서

- * 가입자격확인서는 외부 인터넷 상 발급 불가, 본인이 부모님께 우편발송 필요
- * 가입자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

“장병내일준비적금” 가입 시 “가입자격확인서”는 가입 은행별로 제출 (2개 은행 가입 → 가입자격확인서 2부 필요)

납입방법 2가지 방법중 본인이 선택, “적금가입 후 ‘은행명, 계좌번호’ 확인 / 메모 필수”

1 급여 중앙공제	2 자동이체
<p>부대(기관)에서 급여 입금 시 개인별 “장병내일준비적금” 월 납입액을 공제</p> <p>※ 가입월 및 전역(소집해제) 해당월에는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(적금계좌)로 월 적금액을 입금 해야 함</p>	<p>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에 “장병내일준비적금” 계좌로 자동이체</p> <p>※ 신청 다음달부터 자동이체가 실행되니, 신청 당월은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(적금계좌)로 월 적금액을 입금 해야 함</p>

해지방범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 (신분증 지참 필수)

- ☞ 전역(소집해제)에 따른 만기해지 시에는 반드시 전역일(소집해제일)이 포함된 서류 제출 필수
- * 서류는 병역증, 전역증, 병적증명서, 복무사실확인서(대체복무요원 해당) 중 택 1 (원본)
- * 은행별 1부씩 제출 (2개 은행 해지 → 서류 2부 필요)



TIP.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 이행자의 편의 및 적금가입기간 보장을 위하여, 본인의 모바일기기를 통한 비대면 가입/해지가 가능하도록 전국은행연합회, 군인공제회와 은행에서 시스템 준비중 (*22년 상반기 시행 예정)